

論 文

豫防消防行政의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I]

—서울特別市 建築物의 消防施設을 中心으로—

柳 昭 賢*

Ryu, So Hyun

목 차

第1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目的

第2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第2章 消防行政의 理論的背景

第1節 消防行政의 概念

第2節 우리나라 消防行政의 史的考察

第3節 消防行政의 類型

第4節 消防施設의 設置過程

第5節豫防消防行政의 分析을 위한 틀

第3章 消防施設의 設置 및 維持管理分析

第1節 建築許可等의 同意

第2節 消防施設의 設置

第3節 消防施設의 維持管理

第4章豫防消防行政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第1節 消防施設 設置過程上의 問題點

第2節 消防施設 維持管理上의 問題點

第3節豫防消防行政의 改善方向

第5章 結 論

參 考 文 獻

第1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目的

人間生活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중의 하나인
熱과 불씨는 여러가지 媒體를 통하여 편리한 생활
을 營爲하고 있는 반면에 热과 불씨의 取扱不注意

또는 管理疏忽로 인한 火災事故로 귀중한 人命과
財產被害를 당하는 災難이 우리 주위에서 수 없이
發生하고 있다. 특히 現代社會는 고도의 經濟成長
과 더불어 科學文明이 急速度로 발달하면서 우리,
日常生活周邊에는 热과 불씨를 이용하기 위한
木材·電氣·油類·ガス 等을 사용하는 機械·器具·設備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널리 普及되고,
住宅 또는 不特定多數人이 출입하는 建築物은
建築技術의 발달로 大型化·複雜化·過密化의
현상이 두드러져 火災發生 脆弱要素가 도처에
산재되어 있다. 다음 〈表1-1〉의 火災發生現況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火災事故는 72,551件이 발생하여 人命被害
11,566名, 財產被害 120,260,405千원이라는 많은
損失을 가져왔다.

火災의豫防警戒와 鎮壓活動을 基本業務로 하는
消防行政의 歷史는 오래 되었지만 消防行政에
대한 為政者의 관심이 未洽하고, 政策決定 過程에
서는 行政人 價值觀의 差異·行政機關의 構造的
障礙·情報의 制約 等으로 消防行政은 優先順位에
서 뒤지고, 國民들 마저 日常生活을 하는데 있어서
公益의 構成要素¹⁾로 지적되는 普遍化된 價值,
共同體 自體의 利益, 財貨나 用役의 外部性, 未來
의 利益이나 效用性, 多數의 利益 등이 고려되지
않은 생활태도가 오래지속되어 왔고 消防行政人은
消防行政人이 지녀야 할 專門知識과 技術의 科學
의 思考力이 未洽하여 消防行政의 發展이 微微
한 실정이다.

政府에서는 火災事故로 인한 人命被害와 財產被

1) 朴龍治, 行政學演習(서울:高麗苑, 1987), p.213.

害를 방지하기 위한 消防行政業務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消極的인 鎮壓消防行政業務에 보다 많은 消防力を 集主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國民의 生活水準이 향상되면서 住居施設, 勤務場所, 休息空間의 環境이 변화되고 安全에 대한 欲求가 증가되어 消防行政의 行態는 質的·量的으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消防行政의 役割도 消極的인 鎮壓消防行政體制를 벗어나서 極度的인 豫防消防行政體制로의 轉換이 요망되는 시점에 왔다고 하겠다.

이에 本研究에서는 火災를 豫防警戒하여 火災로 인한 被害를 極小화하고자 建築物에 設置되는 消防施設을 中心으로 ① 建築許可등의 同意過程을 통한 消防施設의 設置計劃 檢討 ② 施工過程을 통한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 ③ 設置된 消防施設의 維持管理制度 등을 分析하여 問題點을 导出하고 이에 대한 發展方向을 밝히므로서 豫防消防行政을 定着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다.

第2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本研究의 目的이 火災事故로 인한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產被害를 방지하기 위한 豫防消防行政의 發展方向을 밝히는데 있으므로 豫防消防行政의 主軸이 되는 “建築物에 대한 消防施設의 設置”를 중심으로 하여 이를 둘러싸고 있는 消防行政活動과 消防對象物²⁾의 構造的 特性이 함께 작용하는 豫防消防行政의 制度的 側面을 중점으로 豫防消防行政上의 沢害要因을 导出하여 이의 改善方向을 밝히는데 특히 다음 <表1-1>의 火災發生現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서울特別市에서 발생한 火災事故는 29,539件으로 全國火災發生件數의 40.7%를 차지하고 있는바 本研究의 範圍는 1988年1月現在를 基準으로 서울特別市에 建築되어진 公演場·競技場·集會場·飲食店·遊技場·市場·旅館·호텔·旅人宿·寄宿舍·醫療院·老人福祉施設·兒童福祉施設·心神障礙者福祉施設·幼稚園·公衆沐浴場·停車場·待合室·教會·

2) 消防對象物[消防法 第2條 第1號]이라 함은 山林·船舶(선박안전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항내에 계류된 선박에 한한다), 船渠·車輛·建築物·기타의 工作物 또는 物件을 말한다.

寺刹·4層以上의 共同住宅·學校·學藝展示館·講習所·事業場·工場·映畫 및 텔레비전撮影所·倉庫·車庫駐車場·飛行機格納庫·指定文化財·地下街·複合建築物 等의 特殊場所를 對象으로 研究하였다.

本研究를 위하여 서울特別市 消防本部 및 各消防署 現況資料·서울特別市 市政資料·內務部消防局 消防行政資料·東京 消防廳 消防行政資料·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消防行政資料 等을 수집하여 分析의 資料로 사용하였으며, 行政學·行政法學·建築工學·防災工學等의 각종 國內外文獻에서 얻은 資料를 활용하여 統計資料分析(Data Analysis) 方法과 記述的研究(Descriptive Research) 方法을 並行하였다.

<表1-1> 火災發生現況

區分 地域	火災發生件數	人命被害(名)			財產被害 (千원)
		計	死亡	負傷	
全國	72,551	11,366	2,973	8,593	120,260,405
서울特別市	29,539	4,211	916	3,295	23,956,709
對比(서울/全國)	40.7%	36.4%	30.3%	38.4%	21.6%

※ 資料: 서울特別市 消防本部 提供

이상과 같은 接近方法을 이용하여 豫防消防行政의 發展方向을 밝힌 本研究의 展開過程은,

第1章에서는 序論部分으로서 研究의 目的, 範圍 및 接近方法를 한정하여 敘述하였고,

第2章에서는 消防行政의 理論的 background 說明과 分析의 틀을 제시하고자 消防行政의 一般概念을 敘述하고, 우리나라 消防行政을 時代의 으로 考察하였으며, 또한 消防行政의 種類와 그 主要內容을 簡潔하게 敘述하고, 消防施設의 設置過程과 豫防消防行政을 分析하기 위한 틀을 設定하였으며,

第3章에서는 第2章에서 設定한 豫防消防行政 analysis의 틀을 基準으로 消防施設 設置計劃과 消防施設의 施工, 그리고 消防施設의 維持管理를 分析하였으며,

第4章에서는 第3章에서 分析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豫防消防行政의 問題點을 导出하여 이에 대한 改善方向을 模索하였으며,

第5章에서는 結論을 제시하였다.

第 2 章 消防行政의 理論的背景

第 1 節 消防行政의 概念

消防(Fire Service) 이란 語義的으로 보면 “火災를 豫防하고 불을 끄는 일”³⁾ 이라고 記述하고 있다. 消防行政이란 燃燒現象[燃料(可燃物: fuel) · 불씨(熱: heat) · 空氣(酸素: oxygen)의 三要素에 의해 热과 火을 수반하는 酸化反應]의 科學的 인원리를 토대로 火災를 豫防 · 警戒 또는 鎮壓하여 國民의 生命 · 身體 및 財產을 보호하는 社會安全機能을 담당하는 行政이다.

1958年 3月 11日 制定되어 9次 改正을 거친 消防法 第 1條“目的”을 살펴보면 “이 法은 火災를 豫防警戒 또는 鎮壓하여 國民의 生命 · 身體 및 財產을 보호함으로서 公共의 安寧秩序의 維持와 社會의 福利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豫防行政의 概念을 消防法의 目的條項과 관련하여 定義해 보면 消防行政은 火災의 豫防 · 警戒 또는 鎮壓으로 國民의 生命 · 身體 및 財產을 保護하는 狹義의 目的과 이로 인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고 社會의 福利增進에 寄與한다는 廣義의 目的까지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消防行政의 目的達成을 위한 수단은 國民의 日常生活과 直接關聯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公共의 福利增進과 國家 · 社會의 安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範圍와 對象은 廣範圍하다고 하겠다.

第 2 節 우리나라 消防行政의 史的考察

우리나라의 消防行政 起源이 언제부터이며 또한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달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는가에 대하여는 確固한 史證이 부족하고 또한 이 分野에 대한 研究도 未洽하였다. 우리의 조상들은 原始時代를 벗어나 火氣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消防에 대한 관심이 爽然을 것으로 생각되며, 自然發火 또는 人間의 不注意로 인하여 火災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微微하나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消防行政

3) 김민수 · 홍웅선, 國어사전(서울: 어문각, 1971), p.828.

이 발달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消防行政發達史는 흔히 古代時代, 朝鮮王朝時代, 日本侵略時代, 美軍政時代, 大韓民國時代 等으로 나누고 있으나⁴⁾ 本 論文에서는 消防行政의 概念이 定立되지 못한 韓末以前, 近代消防行政이 爽然기 시작한 日帝統治時代 그리고 美軍政時代 및 現代의 의미의 消防行政이 定立되기 시작한 大韓民國政府樹立以後로 나누어서 考察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韓末以前

三國時代를 전후하여 火災는 자주 발생했으나 制度의 으로 消防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다만 火災가 발생하면 軍隊에 의하여 消防活動이 이루어졌다.⁵⁾

高麗王朝 時代에 이르러서는 火災가 더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人口와 大型建物 建築이 증가하고 兵亂이 잦은데 그 원인이 있었으며 別途의 消防組織은 없었고 軍隊에서 消防을 담당하였다. 다만 火災를 방지하기 위하여 地下倉庫를 쌓고 私窯을 설치하며 瓦屋을 짓게 하는 等의 制度가 있었다.⁶⁾

朝鮮王朝 時代에는 우리나라 最初의 消防官署인 禁火都監이 世宗 8年(1426年) 2月 兵曹에 屬하는 機關으로 설치되어 禁火軍을 組織하여 消防活動을 하여 왔으며, 同年 6月에는 禁火都監과 成門都監을 併合하여 工曹에 屬하는 機關으로 修城禁火都監을 설치하여 消防活動을 하여 왔으나 世祖 6年(1460年) 5月 漢城府로 合屬되면서 壬辰倭亂의 潛中에서 禁火組織은 없어지고 兵曹에서 消防을 담당하였다.⁷⁾

舊韓末 隆熙 2年(1908年)에는 宮闈의 火災를 鎮壓하기 위하여 扈衛隊에 消防員을 60名을 선발하고 消防鎗 4대와 기타 器具를 갖추고 消防訓練을 설치하였으며, 隆熙 3年(1909年)에는 水道給水規則을 制定하여 水道를 설치할 때 防火栓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日本은 1905년 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된 다음부터 自國 居留民들의 財產保

4) 内務部, 韓國消防行政史(서울: 正利印刷文化社, 1978), pp.4~168. 韓國消防學會, 韓國消防總覽(서울: 三省印刷株式會社, 1970), pp.50~120.

5) 内務部, 前掲書, pp.4~6.

6) 上掲書, pp.7~9.

7) 上掲書, pp.13~22.

護라는 명분을 내세워 領事館規則(1909年 以後에는 理事廳令으로 변경 制定됨)으로 消防組規則을 制定 · 施行하였다.⁸⁾

II. 日帝統治時代

舊韓末 우리나라를 併合하려는 侵略의 毒手를 뻗히기 시작한 日本은 점차 내정을 간섭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1910年 8月 22日 強壓으로 韓日合邦條約을 調印하고 同年 8月 29日 同條約을 발표하니 이로써 朝鮮王朝는 끝을 맺고 消防行政은 警務總監部 保安課에서 分掌하였다.

日帝統治時代의 消防基本組織은 民間自治消防機構인 消防組였다. 그러나 人口의 密集化와 建築物의 大單位化 추세에 따라 專門의 消防力を 常備시켜 火災豫防活動과 鎮壓活動을 담당하는 消防官署制度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1912年에는 京城消防組에 常備隊를 설치하였으며, 1919年에는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安課에서 消防事務를 分掌하도록 하고, 1922年에는 京城消防組를 京城消防所로 그리고 1925年에는 京城消防所를 京城消防署로 改編하는 等 主要都市에 消防署를 開署하기에 이르렀다.⁹⁾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安課에서 管掌하던 消防事務도 1939年에는 防護課에서 그리고 1943年에는 警備課에서 管掌하였다.

III. 美軍政時代

朝鮮總督府를 인수한 美軍政廳은 警務部에 하에 消防課를 설치하여 消防業務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1945年 11月에는 中央에 警務局消防部를 地方에는 警務部 消防課를 설치하고 서울 · 釜山 · 仁川 · 大邱 · 光州 · 大田 等 全國 主要都市에 45個消防署를 增設하여 全國의 消防署는 50個署가 되었다. 美國政廳은 또 1946年 8月 商務部木木局을 土木部로 승격시켜 그해 4月에 발족했던 中央消防委員會의 업무까지 관장토록 하였으며 1947年에는 中央消防委員會의 집행기구로 消防廳을 설치하였고 각 道에는 道消防委員會와 道消防廳(서울은 消防局, 제주는 消防課)을 설치하여 消防業務를 管掌도록 하였다.¹⁰⁾

8) 上揭書, pp.28~32.

9) 上揭書, pp.43~48.

10) 上揭書, pp.128~130.

IV. 大韓民國 政府樹立 以後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 政府가 수립되자 美軍政時代의 消防廳을 비롯한 自治消防機構는 警察業務에 인수되어 消防行政은 다시 警察行政體制 속에 포함되었다. 1948年 9月 內務部에 中央消防委員會가 소속되면서 中央은 內務部 治安局 消防課에서, 地方은 警察局에서 消防業務를 管掌하였다.¹¹⁾ 消防行政이 警察行政體制에 자리를 잡았으나 인원과 예산 확보등 여러 측면에서 地方自治團體와의 협조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1970年 8月 30일에는 法律第2249號로 政府組織法을 改正하여 內務部의 消防業務機能을 삭제하고 消防事務를 地方自治團體로 移管키로 하였으나 同法附則에서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地方自治團體는 財政事情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기까지 內務部長官이 掌握하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1972年 5月 31日 서울特別市 消防本部 設置條例로, 부산직할시는 1972年 6月 1日 道와 釜山直轄市의 行政機構에 관한 규정中 개정령에 의하여 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에 각各消防本部를 두어 消防事務를 管掌하였고 기타 市 · 道의 消防事務는 內務部長官이 管掌하였다.

1975年 7月 25日 法律第2776號로 民防衛基本法을 制定하고 1975年 7月 23日 法律第2772號로 政府組織法을 改正하여 內務部 治安本部 消防課를 개편하여 民防衛本部 消防局을 설치하여 消防業務를 管掌하도록 하였으며, 大邱市 · 仁川市 · 光州市 등은 直轄市 승격과 동시에 消防本部를 설치하여 消防事務를 管掌하고 기타 道의 市 · 郡은 各 市 · 郡에 설치된 消防署에서, 消防署가 설치되지 아니한 市 · 郡에서는 當該 市 · 郡이 消防業務를 管掌하고 있다.

第3節 消防行政의 類型

消防行政의 類型은 分類의 基準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흔히 지적되고 있는 것은 豫防消防行政과 鎮壓消防行政으로 分類하고 있다.

豫防消防行政이란 火災事故를 事前에 방지하기 위한 豫防警戒勤務活動으로서 火災豫防은 물론

11) 上揭書, pp.136~137.

火災發生時 通報·消火·避難等의 활동이 圓滑하게 이루어져 被害가 極小化되도록 指導하는 消防行政業務이며, 鎮壓消防行政이란 火災發生時 休系의 消火 및 人命救助活動으로서 人命과 財產被害의 擴大를 저지시켜 被害를 最少화하고 火災原因과 火災로 인한 損失을 調查分析하여 科學의이고 發展의 消防行政의 政策決定에 기여하고자 하는 消防行政業務이다. 따라서 豫防消防行政과 鎮壓消防行政을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豫防消防行政

豫防消防行政業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火災豫防上 危險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者 또는 消防活動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所有者·管理者 또는 占有者(이하 “關係者”라고 한다)에 대하여 ① 불장난·모닥불·吸煙 및 火氣取扱의 禁止 또는 制限 ② 태고 남은 불 또는 火氣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③ 방치되어 있는 危險物 기타 燃燒의 우려가 있는 物件의 처리와 함부로 存置 또는 放置되어 있는 그러한 物件의 移動 또는 撤去 ④ 기타 火災豫防上 현저하게 危險하다고 인정되는 行위의 禁止 또는 制限等 火災의豫防措置命令을 한다[消防法 第4條]

(2) 火災의豫防 또는 鎮壓對策을 위하여 消防對象物이 있는 場所 및 그 隣近地域에 출입하여 消防検査를 하고[消防法 第5條] 火災豫防上 필요하거나 또는 火災가 발생하면 人命에 危險이 미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權原을 가진 關係者에 대하여 當該消防對象物의 改修·移轉·除去·使用의 禁止 또는 制限·工事의停止나 中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고[消防法 第7條] 消防施設이 규정에 맞게 設置維持되지 아니한 때에는 是正命令을 한다[消防法 第29條].

(3) 建築許可等에 관하여 許可 또는 確認의 權限을 가진 行政廳 또는 그 委任을 받은 者가 요청한 建築許可同意을 하고[消防法 第9條] 消防施設의 工事 또는 整備를 하기 위한 施工申告가 있으면 이를 檢討·回示하여 消防施設이 適正하게 施工되도록 指導하고 工事が 完了되면 完工検査를 하여 消防施設을 사용하도록 한다[消防法 第42條의 10].

(4) 一定規模 이상의 特殊場所에는 防火管理者를 選任하여 消防施設 維持管理等 防火管理上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消防法 第10條].

(5) 高層建物等 多數人이 출입하는 場所에서 사용하는 展示用合板等은 防炎性能이 있는 것으로設置하도록 한다[消防法 第12條].

(6) 危險物의 製造·貯藏·取扱은 設置許可를 받은 危險物의 製造所·取扱所·貯藏施設(이하 “危險物製造所等”이라고 한다)에서 危險物取扱主任(者) 참여하에 취급하도록 하고 一定數量 이상의 危險物을 취급하는 製造所等에서는 危險物施設安全員과 自體消防組織을 두고, 豫防規程을 정하게 하는 등 危險物製造所等에 대한 位置·構造·設備와 危險物의 貯藏·取扱狀況을 감독한다[消防法 第22條].

(7) 消防教育·訓練, 消防巡察, 消防公務員 固定配置, 불조심 電話聯動制, 消防弘報活動을 통하여 防火意識을 제고한다.

II. 鎮壓消防行政

鎮壓消防行政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火災發生時 效果의이고 體系의 火災鎮壓 및 人命救助活動을 展開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消防力 즉 人員·裝備·消火藥劑(消火用水)가 확보되어야 하는바 다음 <表 2-1>의 서울特別市消防力 現況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消防人力은 2,587명으로 消防力基準에는 미치지 못하나¹²⁾ 서울特別市消防本部, 消防學校, 各 消防署 및 各 消防官出張所·消防官派出所 그리고 消防航空隊·青瓦臺消防隊에 각각 配置되어 消防行政을 담당하고 있으며 ② 消防裝備로는 特殊消防車 51대, 一般消防車 256대 行政車 51대, 消防헬리콥터 2대等 360대의 裝備를 보유하고 ③ 消防用水施設은 8,493個를 확보하여 消防活動에 임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消防力 補強에 힘쓰고 있다.

(2) 消防用水施設을 조사하여 火災時 사용토록 관리하고, 幹線 또는 支線道路의 폭과 거리·交通의 狀況·土地의 高低·建築物의 概況 기타 消防活動에 필요한 地理를 조사한다[消防法施行規則第1條].

12) 內務部, “2000年代 消防行政推進計劃報告書”, 1987, p.3.

(表2-1) 서울特別市 消防力 現況[1988.1]

○ 消防人材		○ 消防裝備		○ 消防用本部設	
階級	人員	裝備名	數量	裝備名	數量
消防正監	1	高架車	12	救急車	26
消防監	3	起重車	14	警備車	14
消防正	13	放水塔車	2	其他消防車	23
消防領	36	化學車	18	乘用集合車	38
消防會	74	排煙車	4	貨物車	13
消防副	94	救助車	1		
消防長	260	梯子車	91	消防	2
消防校	538	警戒車	88	消防器具	
消防士	1,568	指揮車	14		
計	2,587名	計	369輛	計	8,493件

※ 資料：大韓特別市 消防本部 提供

(3) 火災現場에서 効果的의 鎮壓活動을 수행하기 위한 防火警戒區域을 設定하고 區域內에 있는者中 不必要한 者는 退去·出入의 禁止 또는 制限하고 [消防法 第52條], 不得已한 때에는 消火作業에 從事시키거나 避難을 위한 退去를 命한다 [消防法 第54條] 또한 火災가 발생한 消防對象物과 그 消防對象物이 있는 土地 또는 그 이외의 對象에 대하여도 緊急한 때에는 필요한 處分을 하고 [消防法 第55條] 消防用水施設 이외의 用水를 사용하거나 用水路의 水門·橋門 또는 水道의 制水辨을 開閉한다 [消防法 第57條].

(4) 火災가 발생한 原因과 損害를 조사하여 [消防法 第58條] 消防行政의 政策決定 資料로 활용한다.

(5) 消防車 優先通行訓練, 特殊場所에 대한 圖上訓練·現地適應訓練, 不時車庫脫出訓練, 消防裝備操作訓練, 人命救助訓練 그리고 不斷한 火災鎮壓技術訓練으로 鎮壓態勢에 철저를 기한다.

(6) 其他 緊急患者移送業務等 對國民 봉사업무를 한다.

第4節 消防施設 設置過程

建築制度는 建築物의 基準·構造·設備 等에 관한 基準과 建築物의 構造의 安全 等을 규정하고 있으며, 建築物은 都市計劃이나 土地利用計劃은 물론 國民生活環境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는 建築物의 位置·構造·規模·用途 等의 종류에 따라 消防法 等關係

法令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消防法令에서는 建築物의 位置·構造·規模·用途등의 종류에 따라 消防法 等關係法令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消防法令에서는 建築物의 消防施設 設置 等 建物의 安全管理에 관한 사항을 規制하는 것이 주내용인바 消防施設은 다음 〈表2-2〉의 消防施設 設置過程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設置된다.

消防施設은 建築物의 安全性 확보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長期間에 걸쳐 사용되는 建物의 特性上 建物과 建物에 출입하는 人員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施設이다. 즉 火災事故가 발생할 경우迅速한 通報, 初期消火, 圓滑한 避難誘導等으로 火災로 인한 被害를 極小化하는 設備이다.

第5節豫防消防行政의 分析을 위한 틀

豫防消防行政을 効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한 基本要素로서 消防施設의 完備, 防火施設의 確保 그리고 防火意識의 提高되어야 하는바 現在의豫防消防行政 특히 建築物의 消防施設 設置를 重點으로 分析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틀을 생각할 수 있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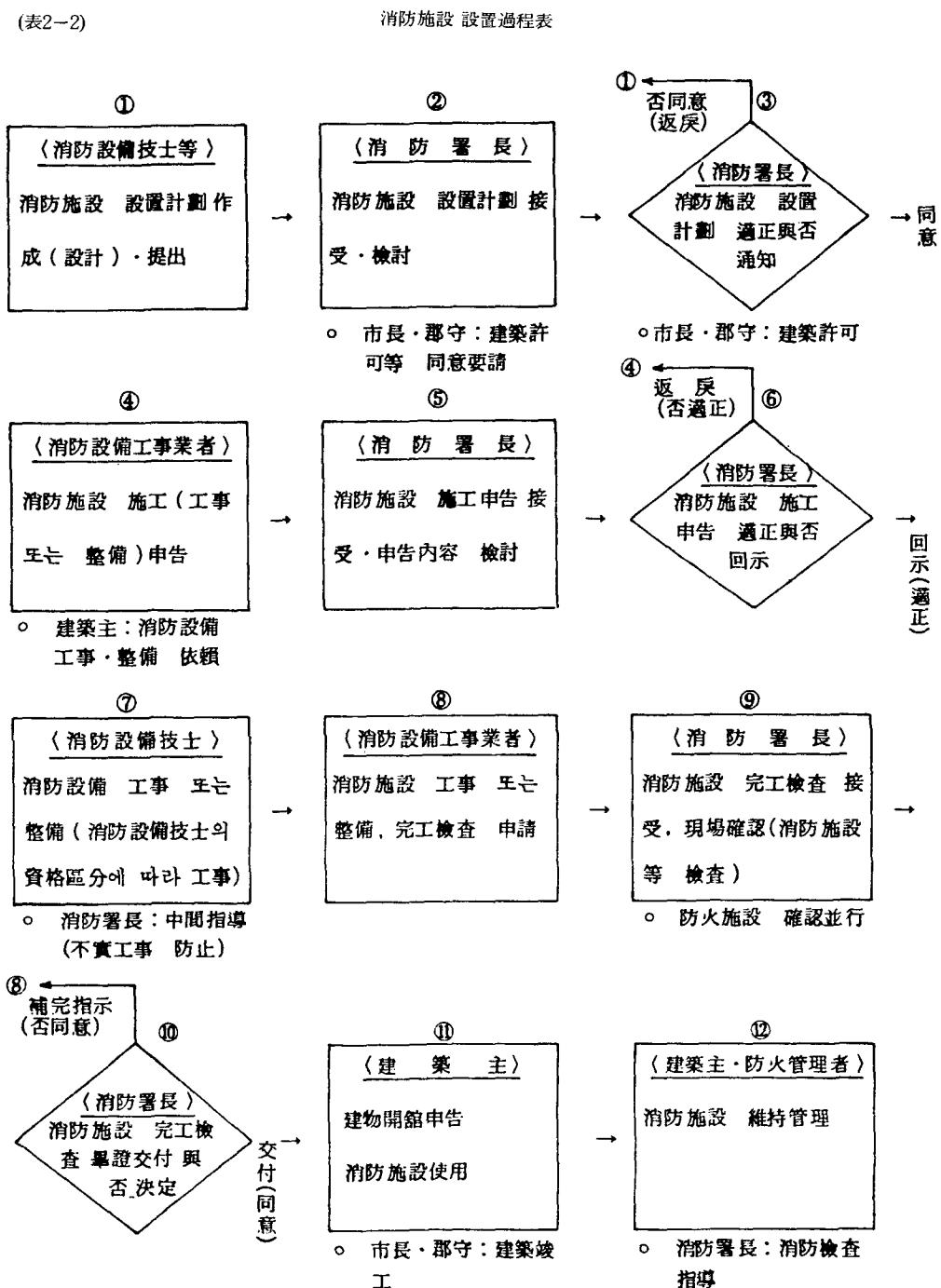
本研究에서 사용될 分析의 틀은豫防消防行政의一般的 類型을 基準으로 하였다. 이 模型에는 消防施設의 完備·防火施設의 確保·防火意識의 提高 等 3個를 變數로 하여

(1) 消防施設 完備 側面으로는 ① 建築許可 同意對象物 基準의 適正性 ② 消防施設 設計圖 作成의 完全性 ③ 建築物 用途別 消防施設 設置基準의合理性 ④ 消防施設 施工上의 完壁性을 分析하고

(2) 防火施設 確保 測面으로는 ① 用途別·層別·面積別·防火區劃의 設置 ② 內構材의 不燃材料·準不燃材料·難燃材料 設置 ③ 非常脫出口等 避難施設의 設置를 分析하며

(3) 防火意識 提高 測面으로는 ① 防火管理者 選任의 適正性 ② 消防檢查制度의 合理性 ③ 消防教育·消防訓練의 効果性 ④ 消防에 대한 關心度等을 分析하는데 이에 따라 바람직한豫防消防行政像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2-2)



I. 消防施設 完備

消防施設은 消防法令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維持管理되어야 한다. 消防施設은 火災
발生을 즉시 覺知하여 이 사실을 建物内外에 있는
關係者 等에게 通報하고, 自動 또는 關係者の
操作에 의하여 물 또는 기타 消火薬劑를 사용하여
消火作業을 행하며, 避難活動이 圓滑하게 이루어
지도록 誘導하며, 消防公格員 또는 消防車의 消火
活動上 필요한 設備를 提供함으로서 火災豫防은
물론 火災被害의 極小化로豫防消防行政의 目標를
실현하게 된다.

II. 防火施設 確保

火災豫防上 필요하거나 또는 火災가 發生하면
人命에 危險이 미칠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建築物을 耐火構造 또는 防火構造로 하고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과 거실
로부터 地上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
은 콘크리트·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
유리·몰탈·회 기타 이와 유사한 不燃性의
材料로서 建設部長官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한
不燃材料, 不燃材料에準하는 防火性能을 가진
建築材料로서 그性能을 認定하여 指定한 準不燃
材料 또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性能을 가진
建築材料로서 그性能을 認定하여 指定한 難燃材

料로 設置하므로 火災豫防한다. 또한 벽·기둥·
바닥·보·지붕·주계단 等(이하 “主要構造部”라
고 한다)이 耐火構造 또는 不燃材料로 된 建築物
은 用途別·面積別·層別로 耐火構造로 된 바닥·
벽 및 甲種防火門¹³⁾ 區劃하고 本造建築物은 防火壁
을 설치하고, 區分을 해야 할 建築物은 警戒壁
또는 간막이벽을 설치하므로 火災發生時 다른
場所로의 延燒을 저지시키고, 建物內에 있는 人員
의 安全한避難을 위하여 避難階段·屋外避難階段·
特別避難階段·非常脱出口를 확보한다.

III. 關係者の 防火意識 提高

火災事故는 대부분 사람의 不注意와 無關心속에
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豫防消防行政을 定着시
키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은 建物主等消防對象物의
關係者が 先進市民으로서 火災脆弱要因 事前除去,
消防施設의 常時作動狀態 維持管理, 防火의側面이
고려된 建物構造의 維持管理 等消防行政에
대한 積極的인 관심을 갖고 建物의 安全管理業務
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消防 및 防火施設을
지속적으로 點檢·整備하여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지하는 일이 없도록 維持管理하여야 하며, 自體
防火巡察을 확행하고, 從事員에 대한 철저한 消防
education·訓練을 실시하는 等火災豫防警戒活動強化
로 防火管理體系를 확립한다.

13) 甲種防火門의 構造[建築法施行令 第29條 第1項]
①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②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 이상인 것.
③ 기타 建設部長官이 위 ①·② 호에 준하는 防火性能
이 있다고 認定하여 指定한 것.